

개 정 법 령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0,878호·1982. 8. 5)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되, 제4항(중전의 제3항)중 “150제곱미터 이상으로”를 “150제곱미터”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으로 한다.

1. 국민학교는 12학급까지는 학급당 290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학급마다 36학급까지는 105제곱미터, 37학급이상은 85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2. 중학교는 12학급까지는 학급당 350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학급마다 36학급까지는 115제곱미터, 37학급이상은 95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3. 고등학교는 12학급까지는 4천900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학급마다 36학급까지는 125제곱미터, 37학급이상은 105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 각급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체육장의 규격은 한변의 길이 또는 대각선 길이가 1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차도의 거리로 2킬로미터 이내에 학교·공원·광장·기타 시설물에 직선길이 130미터 이상의 공공 시설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유치원의 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한 것으로서 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보통교실(반당 실면적의 기준은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원아의 수가 반당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상)

2. 유희실(실면적의 기준은 50제곱미터 이상)

3. 변소(대변기는 반당 1개 이상)

제10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각실(유치원에 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제3조제3항”을 각각 “제3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장실과 사무실” 및 동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중 “(단위:평방미터)”를 “(단위: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치원의 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희실의 면적이 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유치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学校施設·設備基準令 改正理由

幼稚園, 初·中等學校의 施設基準을 緩和함으로써 學校設立을 위한 用地確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 學校의 設立을 容易하게 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初·中等學校의 體育場의 基準面積을 現行基準面積에서 平均 30퍼센트 緩和함. (令 第3條第2項)

나. 幼稚園의 普通教室 最小基準面積을 66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로 緩和함. (令 第5條第9項)

다. 幼稚園의 必須施設로 되어 있는 園長室·事務室·宿直室·倉庫 등 管理用 各室을 勤奨施設로 하여 幼稚園의 設立을 容易하게 함. (令 第10條第1項第12號)

(법제처 제공)

시장법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 제10,887호·1982. 8. 9)

시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이라 함은 시장의 주된 기능

인 물품의 매매·교환기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공부령이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상설시장의 업태별종류·내용 및 영업자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의 영업자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의 업태별 종류 및 그

내용은 별표 1 과 같다.

제 4 조 (상설시장개설자의 자기소유건물등의 기준) ① 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개설허가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매장면적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5 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 5 조 (상설시장의 건물·매장면적 및 시설) ① 법 제 7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매장면적 및 시설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도 상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상설시장 개설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6 조 (상설시장의 조건부허가) 법 제 7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시장이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공공의 이익 기타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제 7 조 (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상설시장개설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설시장사업의 양도·양수가 시장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와 법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기시장의 시설기준등) 법 제 1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급수시설·배수시설·위생시설(화장실·오물 수거장)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 9 조 (계절시장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등)

① 법 제 1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설시장개설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3.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 1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계절시장개설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시장개설 허가가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때
3. 제 8 조제 1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③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계절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점포 및 시설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 조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 1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 1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상 시장관리인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시장관리인은 정기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점포 및 시설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1 조 (조례에의 위임) 제 9 조 및 제 10 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계절시장 및 정기시장의 운영·관리와 관리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12 조 (경영진단기관의 지정) ① 법 제 15 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타 상공부장관이 경영진단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상공부장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와 그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 13 조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① 법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개설자·시장관리인 및 연쇄화사업자의 경영·판매의 지도와 판매요원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3. 기타 상공부장관이 경영·판매의 지도능력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수기관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와 그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 14 조 (판매사의 자격기준등) ① 법 제 1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는 법 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의 자격시험실시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판매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한 자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자격시험의 실시·등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상공부장관은 판매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판매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계속해서 2 년이상 유통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판매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감 독) 상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9조제 1 항의 검사를 행한 후 연쇄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장의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위탁) 상공부장관은 법 제2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의 자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기준 구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 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존시장개설자가 그 기간내에 법 제 7 조제 1 항의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 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는 법 제 7 조 제 1 항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존시장개설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2 년이내에 시장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시장개설자가 부칙 제 2 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기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상설시장의 업태별종류·내용 및 영업자수(제 3 조 관련)

기능별	업태별 종류	내 용	영업자수
도매	도매시장	주로 최종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산품 위주로 매매·교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	10인이상
소매	1. 일반소매 시장	주택가시장·상가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의 매매·교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	10인이상
	2. 백화점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 위주(직영매장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1 인이상
	3. 쇼핑센터	백화점·수퍼마켓등 핵심점이 있고 각종 전문점을 비롯하여 레저시설·공공시설등 편익시설과 주차장을 완비하고 직영 또는 임대로 운영되는 소매업의 집단	1 인이상
	4. 대형점	대중종합점(G. M. S.)·염매점(D. S.)·수퍼마켓·전문점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하나의 점포가 별표 2 의 건물면적 이상인 대형 소매점	1 인이상

[별표 2]

상설시장의 건물·매장면적 및 시설기준(제 5 조제 1 항관련)

업태별 종류	건물면적(연면적)	매 장 면 적	시 설
1. 도매시장	5 천제곱미터 이상	건물면적의 60% 이상	가. 유용물시설(전기, 급·배수시설 등)
2. 일반소매 시장	1 천500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700제곱미터 이상)	건물면적의 60% 이상	나. 소비자보호시설(상담실, 소비자, 휴게소, 자유계량대, 공중전화등)
3. 백화점	5 천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3 천500제곱미터이상)	건물면적의 60% 이상	다. 점포기본시설(샷다, 점포의 내장, 간판, 표지물, 홍보판등)
4. 쇼핑센터	1 만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5 천제곱미터 이상)	건물면적의 60% 이상	라. 위생시설(수세식화장실, 오물 수거장, 공동작업장등)
5. 대형점	1 천 500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700제곱미터 이상)	건물면적의 60% 이상	

◇市場法施行令 改正理由

市場法이 全文改正·公布(1981. 12. 31. 法律 第3,537 号)됨에 따라 市場을 業態別로 区分하여 육성·管理하고 市場施設의 近代化를 團謀하며, 販賣土制度의 導入에 따른 필요한 事項을 定하여는 것임.

◇主要骨子

가. 常設市場을 都賣市場·一般小賣市場·百化店·쇼핑

센터 및 大型店으로 区分하여 그 特性에 맞게 육성·管理하도록 함. (令 第 3 條)

나. 常設市場開設法人은 一定比率이상의 市場의 建物 및 直營店舖와 一定金額이상의 資本金을 保有하도록 하여 市場法人의 健全化를 誘導하고 市場의 近代化를 促進하도록 함. (令 第 4 條)

다. 常設市場의 建物 및 賣場面積을 業態別로 구분·設定

하고, 施設基準을 規定하여 市場의 機能을 높이고도록 함.
 (令 第5條)
 라. 定期市場의 施設基準을 規定하고, 市場管理人 및 季節的 定期市場開設者의 指定要件을 訂하여 定期市場의 運營·管理를 改善하도록 함. (令 第8條, 令 第9條

및 令 第10條)
 마. 販賣士의 資格 및 登錄에 관한 基準과 流通研修機關의 指定基準을 規定하여 流通從事員의 資質을 향상하도록 함. (令 第13條 및 令 第14條)

(법제처 제공)

건축조례준칙개정령

(건설부훈령 제581호 · 1982. 8. 11)

건축조례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축조례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준칙)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준칙)는 □□도(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군)·□□시(군)에 있어서는 당해 시(군)의 조례에 의한다.

*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군의 구역에 대하여는 □□시의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제3조 (용도제한)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작성기준

○ 제한건축물의 범위

- (1) 영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격리병원
- (3) 직업훈련소·시설강습소

- (4) 일반업무시설
- (5) 일반숙박시설
- (6) 판매시설
- (7) 위탁시설
- (8) 공장
- (9) 창고시설
-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1) 운수시설
- (12) 자동차관련시설
- (13) 동물관련시설
- (14) 쓰레기오물처리장
- (15) 교정시설
- (16) 묘지관련시설
- (17) 아파트

제4조 (건폐율)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로 한다.

* 작성기준

○ 건폐율 : 2/10~4/10

○ 단서규정에 의한 건폐율 : 3/10~4/10

제5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층을 초과할 수 없다.

* 작성기준

건축물의 높이 : 3층~6층

제6조 (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성기준

조경면적 : 대지면적의 40~60퍼센트

제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곱미터로 한다

* 작성기준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300~600제곱미터

○ 단서규정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 100~200제곱미터

제8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미터

***작성기준**

- (1)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 2~4미터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 1~2미터

제 3 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 9 조 (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 1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 2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 3종 미관지구 :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 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5. 제 5종 미관지구 : 제 1종 내지 제 4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도 가함.

제10조 (건축심의) ① 시장(군수)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용도제한) ① 제 1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작성기준**

○제한건축물의 범위

- (1) 도매시장·시장
-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건재상·공구상·철물점
- (3) 공장
- (4) 창고시설
- (5) 교정시설

- (6) 격리병원
- (7) 정육점·세탁소·장의사
- (8) 묘지관련시설
- (9) 자동차관련시설
- (10)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공동주택·기숙사

② 제 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항제 1호 내지 제 9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 제 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항제 1호 내지 제 8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제 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항제 1호 내지 제 6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 제 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항제 1호 내지 제 5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종 미관지구 : 제곱미터
2. 제 2종 미관지구 : 제곱미터
3. 제 3종 미관지구 : 제곱미터
4. 제 4종 미관지구 : 제곱미터
5. 제 5종 미관지구 : 제곱미터

***작성기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1) 제 1종 미관지구 : 300~600제곱미터
- (2) 제 2종 미관지구 : 200~400제곱미터
- (3) 제 3종 미관지구 : 200~400제곱미터
- (4) 제 4종 미관지구 : 150~300제곱미터
- (5) 제 5종 미관지구 : 200~400제곱미터

제13조 (대지의 최소폭)

***필요시의 규정**

제14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종 미관지구 : 미터
2. 제 2종 미관지구 : 미터
3. 제 3종 미관지구 : 미터
4. 제 4종 미관지구 : 미터
5. 제 5종 미관지구 : 미터

***작성기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 2~4미터

제15조 (건축물의 높이) 제 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기준**

건축물의 높이 : 2층~4층

제16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표에 정

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	미관지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 2 종	미관지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 3 종	미관지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 4 종	미관지구	—	—
제 5 종	미관지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성기준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	미관지구	10~20	8~16
제 2 종	미관지구	8~16	6~12
제 3 종	미관지구	8~16	6~12
제 4 종	미관지구	—	—
제 5 종	미관지구	8~16	6~12

② 제 1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제곱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 층이하						<input type="checkbox"/>
4 층~10 층						<input type="checkbox"/>
11 층~15 층						<input type="checkbox"/>
16 층이상						<input type="checkbox"/>

*작성기준

(단위 : 제곱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 층이하						50~100
4 ~10 층						100~200
11~15 층						200~400
16 층이상						400~800

제17조 (부속건축물의 규모) 시장(군수)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조례에 직접 규정도 가함.

제18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군수)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 및 색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조례에 직접 규정도 가함.

제19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의견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0조 (용도제한) 교육연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작성기준

○제한건축물의 범위

- (1) 영 부표 제 4 항(근린생활시설) 중 제 6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격리병원
- (3) 숙박시설
- (4) 판매시설
- (5) 위락시설
- (6) 관람집회시설
- (7) 공 장
- (8) 창고시설
-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10) 운수시설
- (11) 자동차관련시설
- (12) 동물관련시설
- (13) 쓰레기오물처리장
- (14) 교정시설
- (15) 묘지관련시설

제 5 장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1조 (용도제한) 업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작성기준**

○제한건축물의 범위

-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공동주택·기숙사
- (2) 종교시설
- (3) 격리병원
-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 (5) 시 장
- (6) 위락시설
- (7) 관람장
- (8) 공 장
- (9) 창고시설
-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11) 자동차관련시설
- (12) 동물관련시설
- (13) 쓰레기오물처리장
- (14) 교정시설
- (15) 묘지관련시설

제 6 장 임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2조 (용도제한) 임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11.

***작성기준**

○허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 74조제 1 항에 계기한 것

제 7 장 공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3조 (용적율)

***필요시에 규정**

제2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제곱미터
2. 제 2 종 공지지구 : 제곱미터
3. 제 3 종 공지지구 : 제곱미터

***작성기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1) 제 1 종 공지지구 : 300~600제곱미터
- (2) 제 2 종 공지지구 : 200~400제곱미터
- (3) 제 3 종 공지지구 : 150~300제곱미터

제25조 (대지안의 공지) 제 1 종 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미터

***작성기준**

- (1)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 4~6미터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 2~4미터

제 8 장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6조 (용도제한)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2.
3.
4.

***작성기준**

○제한건축물의 범위

- (1) 발전소
- (2) 제련소
- (3) 요업공장
- (4) 화학공장

제27조 (건축물의 높이) 시장(군수)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조례에 직접 규정도 가함**

제 9 장 자연환경보전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8조 (용도제한)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2.
3.
4.
5.
6.

7.

***작성기준**

○허용건축물의 범위

- (1)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 (2) 농수산물시험장 및 검사소
-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건축물
- (5) 수족관·동물원·식물원
- (6) 근린공공시설
- (7) 일용품 소매점·이용원·미용원·약국·의원·대중음식점·일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

제10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제29조 (건축제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 1.
- 2.
- 3.
- 4.

***작성기준**

○허용건축물의 범위

- (1) 자동차관련시설
- (2) 동물관련시설
- (3) 운동시설
- (4) 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기간 6개월이내의 가설건축물

제11장 대지안의 조경

제30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9조의2 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제곱미터당)	상록비율(퍼센트)
---	---	-------------	-----------

교 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가 자라는 나무) 본 이상 상록수 낙엽수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본 이상

***작성기준**

구	분	식재밀도(제곱미터당)	상록비율(퍼센트)
---	---	-------------	-----------

교 목 0.2~0.4본 이상 상록수 40~60 낙엽수 40~60

관 목 0.4~0.6본 이상 —

제31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12장 용 적 율

제32조 (용적율)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다음과 같다.

- 1. 주거전용지역 : 퍼센트
- 2. 주 거 지 역 : 퍼센트
- 3. 준주거지역 : 퍼센트
- 4. 상 업 지 역 : 퍼센트
-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퍼센트
- 6. 자연녹지지역 : 퍼센트
- 7. 생산녹지지역 : 퍼센트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의 조례에 한하여 적용함.

***작성기준**

○영제86조제1항 각호의 용적율의 1/2 이상 1.5 배미만의 범위

○각 지역안에서 다시 행정구역(구·동등)별로 세분하여 규정도 가함.

제33조 (용적율의 완화) ①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6조제1항(제32조)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배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작성기준**

적용용적율의 배수 : 2 배이하

제13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34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3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완화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 제10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10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작성기준**

건폐율 : 9/10이하

제36조 (용적율) ①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의 최소한도의 1/2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배로 한다.

*작성기준

적용용적율의 배수 : 2 배이하

②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2를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 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text{배수} = \frac{\text{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text{당해대지면적}}$$

제37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이상으로 한다.

*작성기준

□ : 1/4 이상

제38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92조 또는 이 조례(준칙) 제 6 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어야 할 거리의 1/2이상으로 한다.

제39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득이한 구조부·실·설비등은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중전규모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14장 건축위원회

제40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97조제 4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41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작성기준

(1) 위원의 수 : 7 ~ 15인

(2) 위원의 임기 : 2 ~ 3년

제4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

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군수)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6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8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49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전문위원·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장 보칙

제50조 (적용의 특례) 이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때로부터 10년 간에 한하여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작성기준

□ : 10분의 5 이상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준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군)조례 제○○○호 □조례, 시(군)조례 제○○○호 □조례, 시(군)조례 제○○○호 □조례 및 시(군)조례 제○○○호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허가와관련된복합민원처리에관한규정

국무총리훈령제179호

제 1 조 (목 적) 이 훈령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타법령상의 각종 인·허가 및 협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지등에 관한 심의) 건축허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검토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에서 처리하며, 그 해당사항의 주관부서와 개별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 6 조에 의한 세부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1.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2.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유기장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시장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설치가능 여부
10.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설치가능 여부
11.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설치가능 여부
12. 지하철 및 철도시설에의 저촉 여부
13. 항공장애사항에의 저촉 여부
14. 항만구역내에서의 규제에 대한 저촉 여부

제 3 조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동시처리절차) 건축허가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건축법 제 5 조제 6 항에 규정된 타법령상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시에 동시에 제출받아 건축허가시 일괄검토 처리한다.

제 4 조 (타법령에 의한 준공검사) 건축물의 준공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준공검사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일괄검토 처리한다.

1. 건축법 제 7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타법령상의 준공검사
2. 하수도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확인
3. 주택건설촉진법 제 4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사용확인
4. 군사시설보호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내에서의 조건부 협의시 그 조건이행의 확인

제 5 조 (심의기준등) ① 제 2 조에 의한 심의기준 및 제 4 조에 의한 검사기준은 그 해당사항의 주관부서에서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의기준 및 검사기준은 법령 및 법령에 관련된 규정과 방침에 근거를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담당자의 재량판단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이며 명백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심의기준 및 검사기준중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은 일정기간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심의기준 또는 검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부서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점용 관련 심의기준
 - 가. 도로점용허가대상건축물의 범위
 - 나. 점용장소(도로)·기간·면적등의 기준
 - 다. 기타 도로점용허가시 검토사항
2. 배수설비관련 심의기준
 - 가. 위치·대지·인구·시설의 유형 및 용도등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 나. 시설주의 부담으로 가능한 공공배수시설의 범위
 - 다. 기타 하수도시설망도등 참고사항
3.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관련 심의기준
 - 가.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그 설치기준
 - 나. 설계의 적정성 판단기준(구조·재료·사용·인원·용량·정화기능등)
4. 상수도관련 심의기준
 - 가. 상수보호구역등 행위제한 사항
 - 나. 급수가능 및 제한구역내 건축가능 범위
 - 다. 기타 상수도시설망도등 참고사항
5. 유기장시설의 설치관련 심의기준
 - 허가 불가능한 지역·지구 및 시설기준
6.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의 설치관련 심의기준
 - 허가 불가능한 지역·지구 및 시설기준(업종별)
7. 시장시설의 설치관련 심의기준
 - 시장의 입지허용지역 및 시설기준
8. 공장입지관련 심의기준
 - 공업배치기본계획에 의한 공장입지 및 시설기준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심의기준
 - 가. 건축물의 용도 및 업종별 설치가능기준
 - 나. 조건부 협의시 조건의 종류 및 범위
 - 다. 별도 협의시 필요한 사항
10.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심의기준
 - 가. 건축물의 용도 및 업종별 설치가능기준
 - 나. 건축물의 규모등 행위제한 내용
 - 다. 조건부 협의시 조건의 종류 및 범위
11.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심의기준
 - 가.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등에 대한 협의기준
 - 나. 조건부 협의시 조건의 종류 및 범위
12. 지하철 및 철도시설관련 심의기준
 - 가. 지하철도로선 및 철도시설 주변의 위치
 - 나. 설치불가능한 시설의 종류 및 행위제한 내용
 - 다. 조건부 협의시 조건의 종류 및 범위
13. 항공장애사항관련 심의기준
 - 가. 건축물의 높이·위치·종류등 협의기준
 - 나. 항공장애등의 설치기준

14. 항만구역내에서의 규제 관련 심의기준
항만구역내에서의 협의기준
- ③ 검사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검사기준
 - 가. 설계도에 따른 구조 및 부속기기등의 시공확인 사항
 - 나. 정화조의 기능 검사방법
 - 다. 기타 유지관리기준등과 관련된 확인 사항
 2.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검사기준
 - 가. 사용자재의 품질규격 기준

- 나. 인입설비·단자함 및 보완설비등의 설치요건
3. 배수설비의 검사기준
- 가. 공공하수도와의 접속방법 및 위치등 시공기준
 - 나. 사용재료의 내수성·누수방지등의 검사기준
 - 다. 배수관의 직경 및 구배등의 설치기준
- 제 6 조 (세부시행지침) 이 훈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은 관련규정의 주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온수보일러설치시공기준제정

제정 82. 8. 27 동력자원부고시 제82-37호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열면적 14㎡ 이하의 유류 연소용 온수보일러(이하 “보일러”라 한다)의 설치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뜻

(1) 지정시공자

지정시공자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7조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재의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상향순환식 : 송수주관을 상향구배로 하고 반방개소의 방열면을 보일러 설치 기준면보다 높게 하여 온수의 순환이 상향으로 송수되어 환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3) 하향순환식

송수주관을 연직으로 배관하여 팽창관 및 방출관을 설치하고 온수를 하향으로 흐르게 하는 배관형식을 말한다.

(4) 송수주관

보일러에서 발생된 온수를 난방개소에 매설된 방열관 및 온수탱크에 온수를 공급하는 관을 말한다.

(5) 환수주관

난방을 목적으로 방열관을 통과하여 냉각된 온수를 재가열하기 위하여 보일러에 환수시켜 주는 관을 말한다.

(6) 급수탱크

팽창탱크에 물이 부족할 때 급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수도관 또는 급수관이 직접 보일러 또는 배관 등에 직결되지 않도록 설치된 탱크

(7) 팽창탱크

장치내 온수의 온도변화에 따라 체적팽창 또는 이상팽창압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일러의 부족수를 보충할 수 있는 장치(그림 3, 그림 4)

(8) 공기방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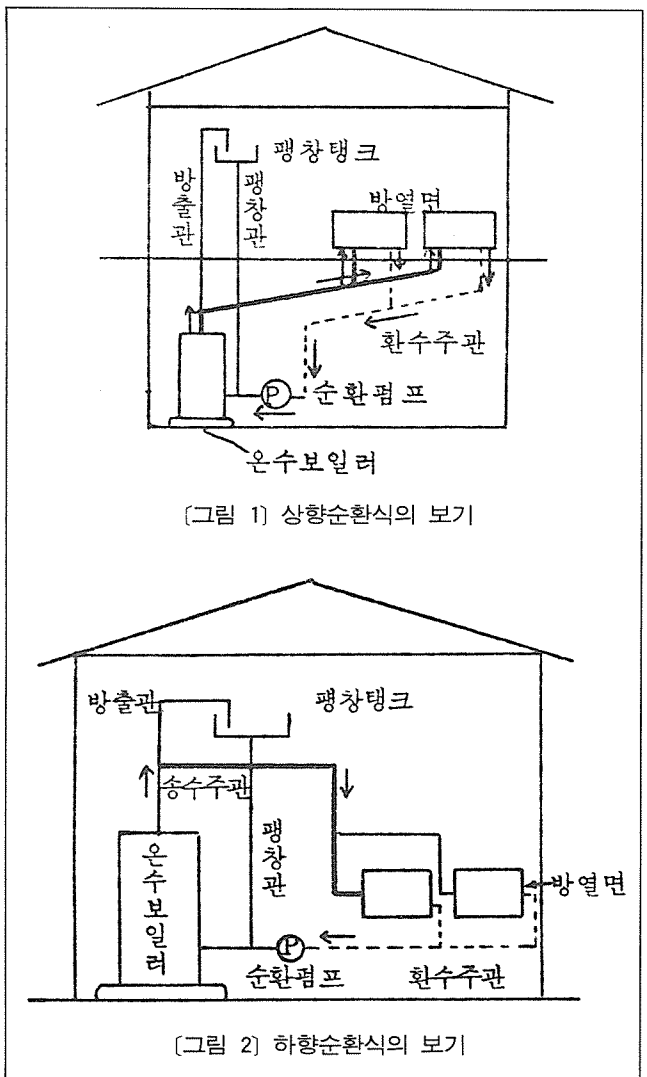
순환수중에 함유된 기포를 외기로 방출하기 위한 장치로서 개방식과 밀폐식이 있다.

3. 설치시공 일반사항

가. 지정시공자(이하 시공자)는 설치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의뢰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시공도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의 시공도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 다.
- (1) 모든 배관의 크기·치수 및 경로
 - (2) 매설된 배관의 경우에는 정확한 매설 위치와 연결부
 - (3) 배관의 단열방식 및 단열재 두께
 - (4) 밸브의 설치위치 및 종류
 - (5) 팽창탱크 및 안전장치의 설치위치 및 규격
 - (6) 전기사용기기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 배전도 및 규격



(7) 보일러 등의 기기의 제조업체명·규격 및 능력

(8) 시공자의 서명 및 계약일자·시공일자

나. 설치시공도의 척도는 1/50 또는 1/25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상에 기재하는 배관의 도시기호는 "KSB 0051"에 의한다.

라. 시공자는 시공시 설치시공 대상물의 장기보존과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재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호장치 또는 부식방지를 위한 피막·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4. 보일러의 설치

가. 보일러의 설치조건

(1) 보일러는 원칙적으로 보일러만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일러실이 없을 때는 풍우를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보일러의 설치위치는 통풍이 양호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굴뚝과 되도록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3) 보일러실은 반드시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가 있어야 하며 강제배기 기구를 병설하면 더욱 좋다. 다만 외기와 접한 창문이 있는 경우는 이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4) 공기배출구는 유입구보다 높이 두는 것이 좋다.

(5) 보일러가 설치되는 바닥면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철저한 방수를 하여 습기에 의한 부식등의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일러는 보일러실 바닥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보일러의 한쪽 면이 벽면과 접할 때는 수리 또는 소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벽면과 적당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8) 보일러실은 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블록 등의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다만, 보일러실의 구조가 내화구조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내화단열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보일러본체와 천정과는 보수·연도설치 등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일러 앞면에는 조작·보수등을 위한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보일러실은 보수, 점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배 관

가. 송수주관 및 환수주관

송수주관 및 환수주관의 관경은 32 A 이상으로 한다.

나. 배관의 보온재 시공

(1) 배관의 보온은 KSF 2803(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른다.

(2) 보온재의 시공은 수압시험을 행하여 누설부위가 없을 때 행한다.

(3) 밸브조작과 배관을 구별하기 위하여 보온시공 위에 배관의 종류 및 진행방향을 표시한다.

다. 배관재료

(1) 설치시공에 사용하는 관의 재료는 KS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의 것 또

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이음쇠는 KSB 1531(나사식 가단추철제 관이음쇠) KSB 1533(나사식 강관제 이음쇠) 또는 내식성의 조립·분해가 가능한 관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밸브류는 KSD 2303(청동 5kg/cm² 슬로우스 또는 게이트 밸브)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배관재료 및 부품은 한국공업규격품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작업은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한 나사이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나사식 이음 가공시는 연결부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 또는 테프론 테이프 등으로 감아 나사연결부에서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전계통이 연결된 후 물을 가압하여 개방상태로 통과시켜 배관내부에 있는 찌꺼기등의 장애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6. 부대장치의 시공

가. 순환펌프

(1) 순환펌프의 규격은 난방순환계통 장치 내에서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는 용량 및 규격의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순환펌프의 설치위치는 보일러본체등의 주위 방열과 배기가스 연도의 방열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에 젖거나 물에 잠길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순환펌프의 설치위치에는 「바이패스」회로를 설치하여 보수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순환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바이패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순환펌프의 배관 접속부는 공기의 흡입, 온수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5) 순환펌프의 흡입측에 펌프자체에 공기 빼기 장치가 없을 때는 공기빼기밸브를 만들어 공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6) 순환펌프의 전원콘센트의 거리는 최단거리로 하고 전선피복등에 피해가 없도록 보호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동초기의 허용전류용량 15A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순환펌프의 흡입측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펌프의 양측에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순환펌프는 방출관 및 팽창관의 작용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환수주관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순환펌프는 펌프의 모터부분이 수평되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급수탱크

물의 누수·증발등에 의하여 물이 부족할 때는 자동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급수탱크가 있어야 한다.

(1) 급수관은 수도관을 직접 보일러 또는 배관등에 직결 하여서는 안된다.

(2) 급수탱크의 구조는 KSG 5112(온수보일러용 시스템)에 따른다. 다만 탱크 크기는 변경할 수 있다.

다. 온수탱크

급탕이 필요한 때는 온수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1) 온수탱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알루미늄 옥 용도금, 아연도금 등 동등 이상의 내식처리가 된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온수탱크는 KSF 2803(보온보냉공사시공표준)에 의한 보온을 하여야 한다.

(3) 온수탱크는 100℃의 온수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온수탱크에는 「드레인」할 수 있는 관 및 밸브가 있어야 한다.

(5) 밀폐식 온수탱크의 경우 팽창관이나 팽창흡수장치 또는 안전밸브(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장치

가. 접지

보일러는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나. 팽창탱크

(1) 팽창탱크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100℃ 이상의 온도에 견디는재질

(나) 온수의 수위를 쉽게 알 수 있는 재료 또는 구조일 것.

(2) 개방식의 경우 팽창탱크의 높이는 최고 높이를 가진 방열기 또는 방열코일면보다 1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얼지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한다.

(3) 팽창탱크에 연결되는 관로에는 밸브·체크밸브 등의 것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 밀폐식 팽창탱크를 사용시는 보일러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 배관계통내의 압력이 제한 압력 이상으로 되던 자동적으로 과잉수를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를 하여야 한다.

(5) 팽창탱크의 용량은 보일러 및 배관내의 보유수량이 200ℓ이하인 경우에는 20ℓ 이상으로 하고 보유수량이 100ℓ 씩 초과할 때마다 10ℓ를 가산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6) 개방식 및 밀폐식 팽창탱크의 구조는 [그림 3] [그림 4]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로써 시공하여야 한다.

다. 팽창관 및 방출관

보일러내부의 온도에 따른 물의 체적팽창과 증기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팽창관 및 방출관(또는 방출밸브)을 설치한다.

(1) 설치위치

팽창관 및 안전관의 설치위치는 순환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작동이 폐쇄 또는 차단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2) 팽창관 및 방출관의 크기

(가) 팽창관의 크기는 다음에 따른다.

보일러 전열면적 5m² 미만 : 25A 이상

보일러 전열면적 5m² 이상 : 30A 이상

(3) 팽창관 및 방출관에는 물 또는 발생증기를 차단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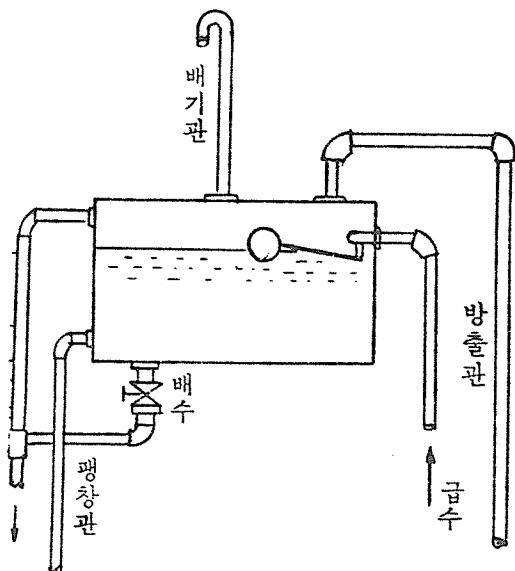
(4) 팽창관 및 방출관의 출구는 급수탱크 또는 팽창탱크 물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5) 팽창관은 굽힘이 적고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온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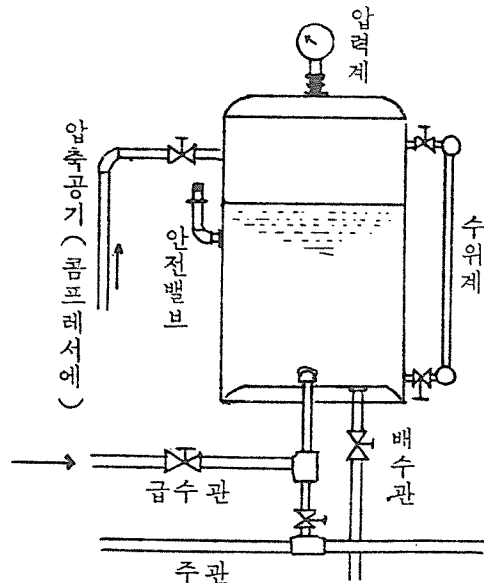
(6) 팽창관을 팽창탱크에 접속할 때에는 수평부분에 상향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라. 공기방출기

(1) 배관중에 이루어진 공기를 자연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관로에 공기방출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의 형식은 개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 개방식 탱크



[그림 4] 밀폐식 탱크

(2) 공기방출기의 높이는 개방식의 경우 팽창탱크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연 도

(1) 연도의 굽힘부의 수는 3개소 이내이어야하고 수평부의 경사는 1/10기울기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보일러 자체가 강압통풍식으로 화실내가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연소시킬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도의 재료는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연도는 주위의 가연물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연료배관

(1) 연료탱크의 위치에 따라서 단관식 또는 복관식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가) 단관식

연료탱크의 위치가 버어너의 펌프위치보다 높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기배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5)는

단관식 배관의 예를 나타낸다)

(나) 복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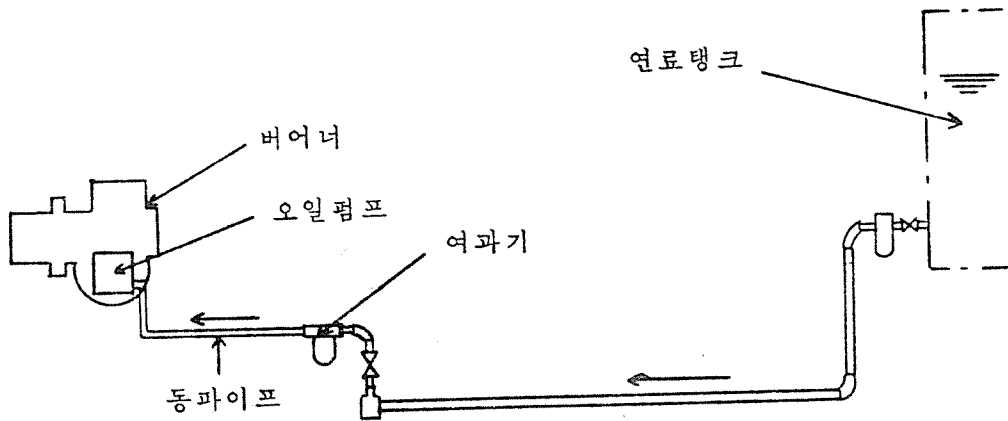
복관식 연료배관법은 연료탱크와 오일펌프와의 사이에 2개의 배관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료탱크가 오일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배관방식으로 공기배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6)은 복관식 배관의 예를 나타낸다)

(2) 보일러와 연료탱크 사이의 배관에는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유수분리기가 있어야 하며 유수분리기에는 드레인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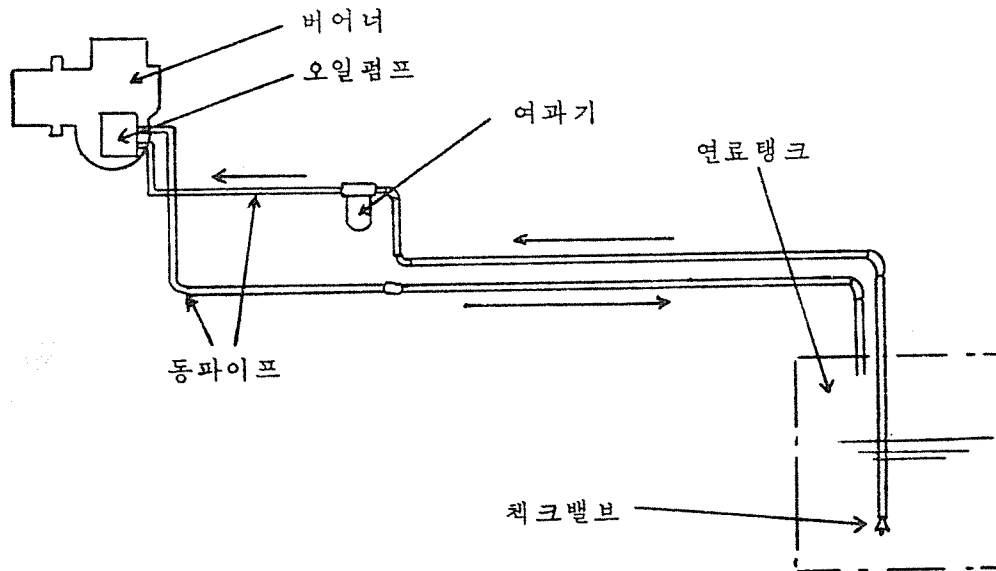
(3) 연료탱크와 버어너 사이의 배관에는 오일스트레너를 부착하여야 한다.

(4) 배관은 노출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통행 기타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하고 짧고 굽힘이 적어야 한다.

(5) 연료배관은 금속배관으로 하여야 하며 배관접속부는 시일테이프 또는 시일제를 사용하여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5) 단관식



(그림 6) 복관식

9. 설치시공검사 및 조치

가. 검 사

시공자는 시공의 양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의뢰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검사를 행하며 의뢰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압시험

배관 및 보일러의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공기 방출기를 개방상태로 하여 배관속에 물을 급수시킨 후 팽창탱크의 판로를 일시적으로 밀폐시켜 실제사용 최고 압력의 2배 (그 값이 2kg/cm² 이하일 때는 2kg/cm²)의 수압을 가 하였을 때 변형이나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2) 보일러의 연소 및 배기성능검사

보일러를 점화하여 정상 연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연도접속부의 가스누설 및 배연의 발생유무를 검사한다.

(3) 연료계통의 누설상태 검사

보일러 가동시 연료배관계통에 누설이 발생하는 가를 검사한다.

(4) 순환펌프에 의한 온수순환 시험

보일러를 정상작용시킨 후 순환펌프를 가동시켜 온수의 순환상태를 검사한다.

이 때 방열관의 표면온도는 표면온도계 등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순환이 적합치 못하면 구배조절이나 순환펌프

의 용량을 다시 결정하여 순환이 양호한 상태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가열면의 「시멘트 몰탈」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자동제어에 의한 작동검사

온수순환시험·시멘트 몰탈시공·양생완료후 실내온도 조절기의 지시에 따른 순환펌프의 작동 및 정지 버어너의 작동 및 정지상태를 검사하며, 실내온도 조절기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는 Hi-Lo 또는 ON-Off시 버어너의 정지 및 작동 순환펌프의 작동과 정지상태가 원활한가를 검사한다.

10.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설치시공검사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9.1) 검사결과 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공자는 사용자 또는 시공의뢰자로부터 설치시공검사확인 서명을 받은 후 1부는 사용자 또는 의뢰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공자가 보관하여야 한다.(설치시공확인서 양식참조)

11. 기타(적용범위)

이 기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험기관 연구소, 학회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설 치 시 공 확 인 서

설 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시 공 자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정 번 호	
시 공 내 용	시 공 기 간	19 년 ~ 19 까지		
	보일러형식		형식승인번호	
	제조회사명		난 방 면 적	m ² (평)
	배 관 형 식	상향식 하향식 기타	방 열 관	직렬식병렬식기타
	굴 뚝	높이 m, 직경 mm	팽창탱크용량	개방식 밀폐식 ℓ
	검 사 항 목		이 상 유 무	비 고
설치시공검사	1. 수압시험 2. 보일러 연소 및 배기성능 3. 연료계통의 누설상태 4. 온수 순환시험 5. 자동제어에 의한 작동			
시공보증기간	19 . . 부터		19 . . 까지	
특 기 사 항	1. 조작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2. 보수 및 점검요령 3. 고장 및 이상의 발견방법 및 조치 : 4. 기타 사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위와 같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19 년 월 일
시 공 자 : 인
설 치 자 : 인